

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. 2. 21 선고 2016가단1184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7. H

8. I

9. J

10. K

11. L

12. M

13. N

변론 종결2018. 1. 31.

판결 선고2018. 2. 21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,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대지를 인도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갑 제1~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가 2014. 6. 5.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, O가 위 지상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소유하던 중 1992.경 사망하여, 그 자손들인 피고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별표 기재와 같이 위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건물 소유자들로서 위 토지를 건물 부지 등으로 점유·사용함으로써 원고의 토지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,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토지를 인도하고, 그 지상에 있는 위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.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고종완

별지